



#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3년 3월호

## Contents

### 회계정보

- 2022 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 세무 및 법률정보

-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 위 규모이며, Global Top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 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mailto: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http://www.crowe.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2022 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http://www.fss.or.kr>]

**주요내용**

**주요내용**

(실적) 금융감독원이 '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표본 98사, 혐의 49사)

◦ 전년도 실적과 비교(5사 감소, △3.4%)하여 큰 차이는 없었는바, 이는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음을 시사

(지적률) 재무제표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

(위반동기) 고의(10.8%) 및 중과실(10.8%) 비율이 21.6%로 감소하는 추세\*

\* 고의+중과실 위반비율 추이 : 28.2%('20년)→25.3%('21년)→21.6%('22년)

(조치)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제도 등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하였고, 회계법인 21사, 공인회계사 69명에 대해 감사절차 소홀로 조치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시사점)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임

→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감사인도 감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를 강화하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

**I. 분석대상**

**I. 분석대상**

□ 금융감독원이 '22년 중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는 총 147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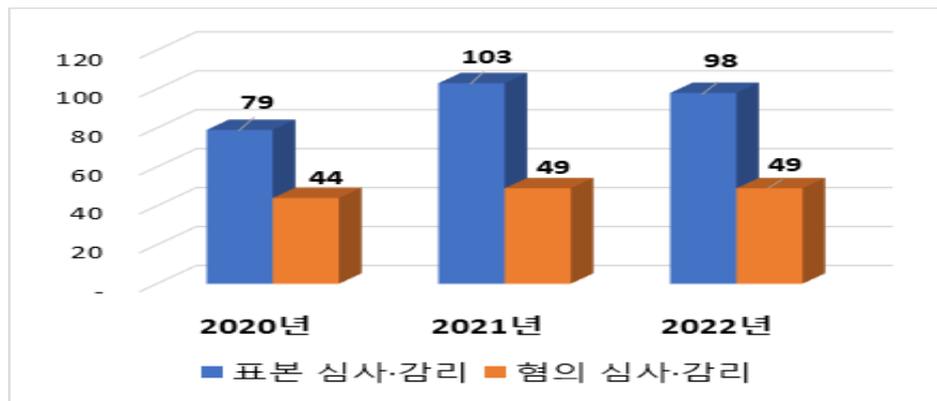
◦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49사, 코스닥시장 89사, 코넥스시장 9사이며, 표본 심사.감리는 98사, 혐의 심사.감리는 49사 완료

- '19년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심사.감리 실시 회사 수는 전년 대비 큰 변동이 없었음(5사 감소, △3.4%)

최근 3년간 심사·감리 상장회사수

(단위 : 사, %)

구 분	'20 년	'21 년	'22 년	'21 년 대비	
				증감	증감률(%)
표본 심사·감리	79	103	98	△5	△4.9
혐의 심사·감리	44	49	49	-	-
합 계	123	152	147	△5	△3.4



(참고) 심사·감리 관련 용어 설명

◆ (심사)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권고 및 수정 후 경조치로 종결

◦ (표본심사)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나 무작위 추출 등을 통해 선정된 회사에 대하여 실시

◦ (혐의심사)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

◆ (감리)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처리 기준 및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정공시 권고를 미이행하는 경우, 회계부정제보 접수 등에 따라 실시

II.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II. 상장회사 등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1. 상장회사 위반건

□ (전체) '22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는 83사로 전년(83사)과 동일

◦ (시장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의 위반은 26사(50사 중 52.0% 지적), 그 외 시장(코스닥·코넥스) 상장회사의 위반은 57사(97사 중 58.8% 지적)

□(지적률) '22년도 심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률은 56.5%\*로 전년(54.6%) 대비 1.9%p 상승

\*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 ÷ '22년도 상장회사 심사·감리 실적(147사)

◦ 표본 심사·감리 건이 소폭 감소(103사 → 98사, 5사↓)하였음에도 총 위반 건(83사)이 동일하여 전체 지적률은 소폭 상승하였는바, 재무제표를 충실히 작성·공시하고자 하는 회사 및 감사인의 노력 필요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35.7%(35사), 혐의 관련 지적률은 98.0%(48사)

- 표본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新 외부감사법규 시행 이후인 '20년부터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혐의 심사·감리 관련 지적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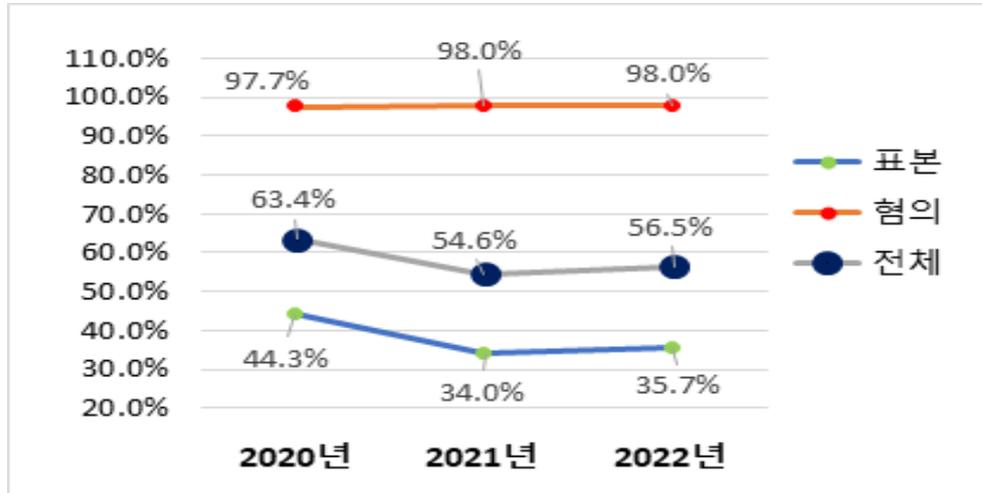
\*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44.3%('20년)→34.0%('21년)→35.7%('22년)

\*\*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 추이 : 97.7%('20년)→98.0%('21년)→98.0%('22년)

**심사·감리 종류별 위반비율**

(단위 : 사, %, %p)

구 분		'20 년	'21 년	'22 년	'21 년 대비
표본	회사수(위반)	35	35	35	-
	지적률	44.3	34.0	35.7	1.7
혐의	회사수(위반)	43	48	48	-
	지적률	97.7	98.0	98.0	-
합 계	회사수(위반)	78	83	83	-
	지적률	63.4	54.6	56.5	1.9



□ (표본 선정 방법별)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당년 지적률은 57.7%(전체 26사 중 15사 지적), 테마는 23.5%(전체 51사 중 12사 지적), 무작위는 38.1%(전체 21사 중 8사 지적)

◦ 위험요소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상장회사의 지적률\*이 높는데 이는 위험요소를 고려한 표본선정이 효율적임을 나타냄

\* 3년 평균 지적률도 위험요소(57.9%) > 무작위(37.8%) > 테마(23.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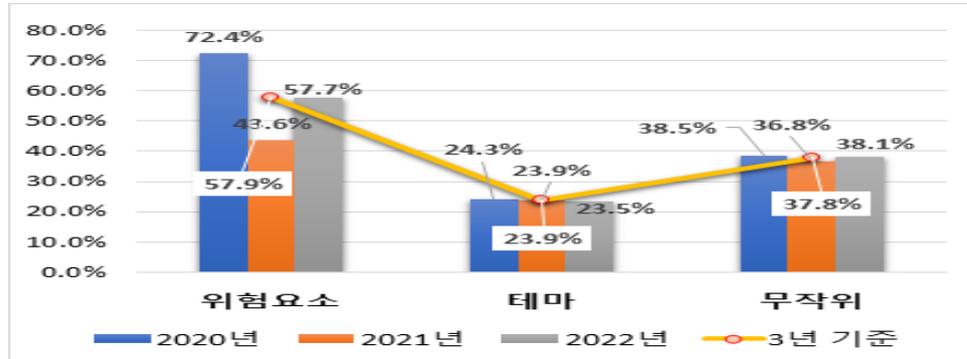
(참고) 표본심사 대상 선정방법

- ① 위험요소: 경영 관련 위험요인(횡령·배임 발생 등), 회계분식위험 등을 고려
- ② 테마: 중점감리 회계이슈 등 회계기준 위반 예방의 필요성이 높은 부문을 고려
- ③ 무작위: 회사별 종전 감리 후의 경과기간 등을 고려

**표본 심사대상 선정방법별 위반현황**

(단위 : 사, %)

표본 선정방법		'20년	'21년	'22년	3년 기준*
위험요소	회사수(위반)	21	17	15	53
	지적률	72.4	43.6	57.7	57.9
테마	회사수(위반)	9	11	12	32
	지적률	24.3	23.9	23.5	23.9
무작위	회사수(위반)	5	7	8	20
	지적률	38.5	36.8	38.1	37.8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산,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 위법행위 유형별

□ (위반유형별)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A유형\* 위반이 있는 상장회사는 63사(전체 83사의 75.9%)로 전년(60사, 72.3%) 대비 3사(3.6%p) 증가

\* 연도별 A유형 위반비율 추이 : 80.8%(‘20년) → 72.3%(‘21년) → 75.9%(‘22년)

◦복합금융상품 유동성 분류 오류(B-D유형),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D유형) 등 기타유형 관련 위반은 20사\*

\* 기타 유형(B~D유형) 위반 상장회사 수 추이 : 15사(‘20년) → 23사(‘21년) → 20사(‘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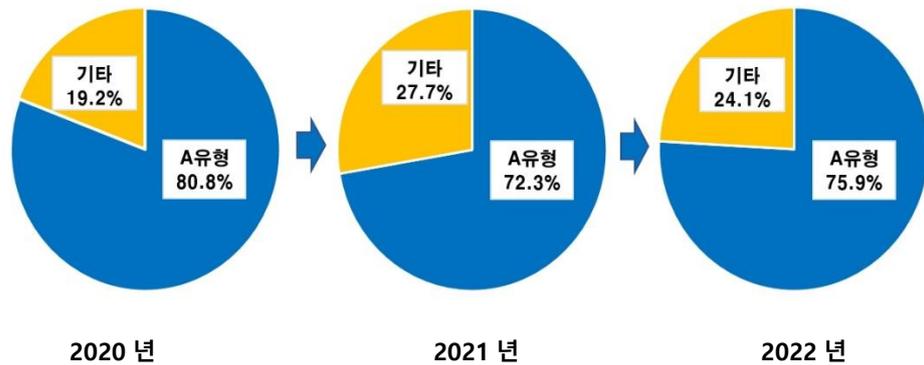
(참고) 위법행위 유형별 분류

- ①A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주는 경우
- ②B유형: 위법행위가 당기손익·자기자본에 영향이 없으나 자산·부채 과대(과소) 계상, 수익·비용 과대(과소) 계상 등과 관련되는 경우
- ③C유형: 위법행위가 주식사항(특수관계자 거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소송 등에 따른 우발부채 등)과 관련되는 경우
- ④D유형: 위법행위가 C유형 외의 주식사항 및 계정과목 분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A~C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행위 유형별 지적 현황

(단위 : 사, %)

위반유형		'20 년	'21 년	'22 년	3 년 기준**
A 유형*	회사수 (위반)	63	60	63	186
	지적률	80.8	72.3	75.9	76.3
기타	회사수 (위반)	15	23	20	58
	지적률	19.2	27.7	24.1	23.7



\* 지적유형이 A 유형과 기타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회사는 A 유형으로 분류

\*\* 유형별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지적률은 각 연도별 지적률을 단순 산술평균

□ (위반건수 분포) '22년도 회계처리기준 위반 상장회사(8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건수\*는 179건(평균\*\* 2.2건)

\* 1개 회사에 여러 건의 위반이 있는 경우 복수 건으로 집계

\*\* '22년 전체 회계처리기준 위반건수(179건)를 위반회사(83사)로 나누어 산정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 회계처리기준 1건 위반은 34사, 2건 이상 다수 위반은 49사

\* 위반건수 구간별 회사분포('22년)

위반건수	1 건	2 건	3 건	4 건	5 건 이상	합계
회사 수	34	24	15	5	5	83

**위법동기별**

□ (고의·중과실) '22년도 위법행위 동기가 '고의'인 회사는 9사\*(10.8%), 중과실은 9사 (10.8%)로 위험요소(표본), 회계부정신고 등 다양한 요인에 따른 감리 결과임

\* 전년(12사, 14.5%) 대비 3사(3.7%p) 감소

◦ 중대(고의+중과실) 위반비율은 매년 감소\*

\* 중대 위반비율 추이 : 28.2%('20년)→25.3%('21년)→21.6%('22년)

◦ (과실) 전체 위반 중 동기가 '과실'로 결정되는 비율이 매년 증가\*

\* '과실' 결정 비율 추이 : 71.8%('20년)→74.7%('21년)→78.4%('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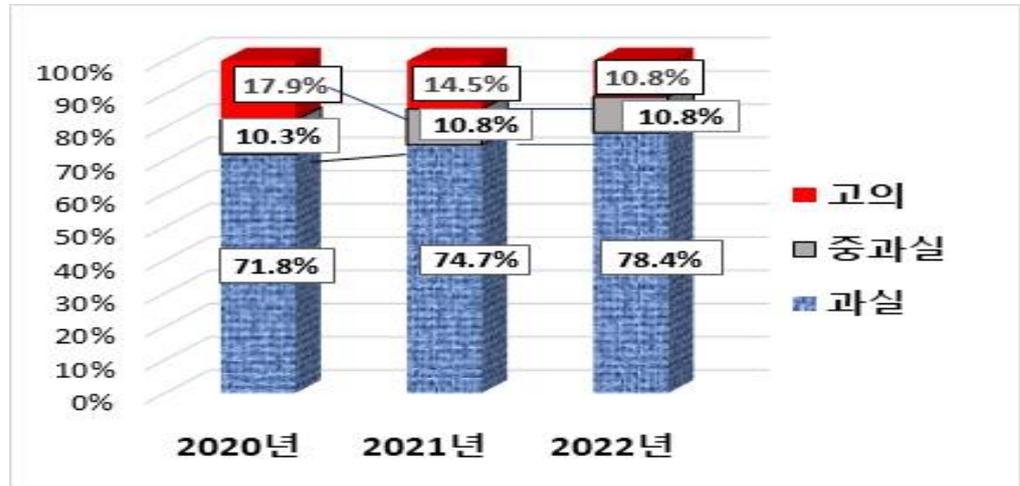
- 이는 다수의 위반이 회계추정·판단과 관련된 것으로 외부감사법규 개정\*에 따라 위법동기를 양적요소(4배) 및 질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했기 때문임

\*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회계정보이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배를 초과 하지 않는 경우 '과실'로 판단

**위법행위 동기별 구성 현황**

(단위 : 사, %)

위법행위 동기		'20 년	'21 년	'22 년	3 년기준*
고의	회사수(위반)	14	12	9	35
	비율	17.9	14.5	10.8	14.3
중과실	회사수(위반)	8	9	9	26
	비율	10.3	10.8	10.8	10.7
과실	회사수(위반)	56	62	65	183
	비율	71.8	74.7	78.4	75.0



\* 위반회사 수는 단순합계, 비율은 각 연도별 비율을 단순 산술평균

### 과징금등 조치

□ (과징금) 위반동기가 '고의' 또는 '중과실'인 상장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최근 3년 내 부과 회사 수는 감소하였으나 부과금액은 증가\*하여, 회사별 평균 부과금액은 지속 증가\*\*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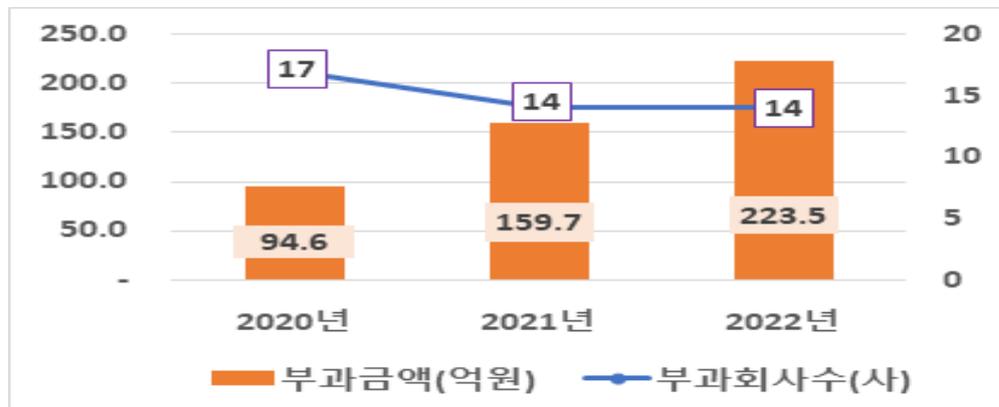
\*\* 회사별 과징금 평균 부과금액 : 5.6억원('20년) → 11.4억원('21년) → 16.0억원('22년)

◦ 이는 외부감사법상 강화된 과징금 부과제도 운영에 기인

###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 사, 억원)

과징금	'20년	'21년	'22년
부과 회사 수	17	14	14
부과 금액	94.6	159.7	223.5
회사별 평균 부과 금액	5.6	11.4	16.0



□ (수사기관 통보 등) '22년 심사.감리결과 검찰 고발.통보 등 수사기관 통보(6건) 및 임원해임권고(11건)는 총 17건으로 전년(22건) 대비 5건 감소

## 2.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 (회계법인) '22년도 14개\*의 상장회사 회계감사 관련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따른 감사인(회계법인) 조치\*\*는 21건으로 전년(30건) 대비 9건(30.0%) 감소

\* '22년도 감리와 관련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가 있는 상장회사 수

\*\* 회계법인 조치 건수 추이 : 37건('20년)→30건('21년)→21건('22년)

◦ 이는 新 외부감사법규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사 경조치(경고, 주의)건에 대해서는 감사인에 대해 감리를 실시하지 않음\*에 주로 기인

\* 동 심사결과는 ①해당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수준 평가 시 감점요인으로 반영되고, ②상장법인에 대한 감사인지정 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등 회계감독 업무에 활용

◦ 한편, 전체 21건의 회계법인 조치 중 대형 회계법인 4사(삼일, 삼정, 한영, 안진) 관련 조치\*는 7건으로 전년(10건) 대비 3건 감소

\* 대형회계법인 4사 조치 비중 : 35.1%('20년) → 33.3%('21년) → 33.3%('22년)

◦ 회계법인의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제도 시행('18.11.1.) 이후 '20년에 과징금이 처음 부과되어 매년 부과금액이 지속 증가\*

\* 회계법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8.4억원('21년)→ 21.1억원('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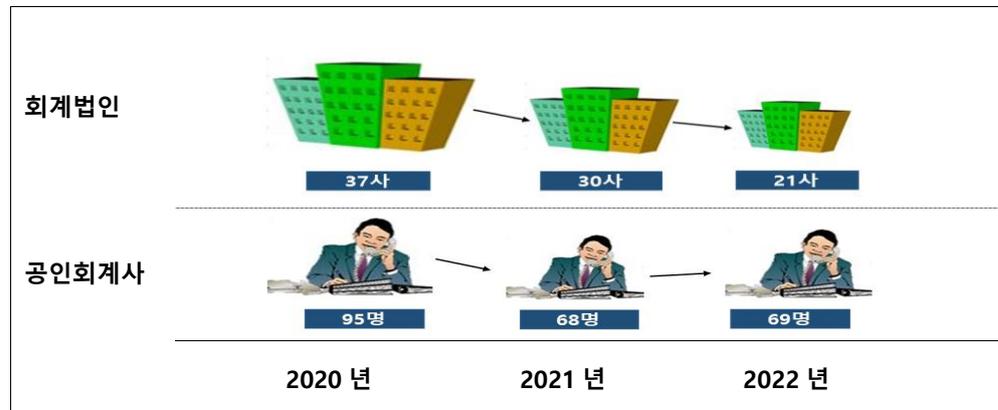
□ (공인회계사) '22년도 상장회사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공인회계사는 총 69명

◦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하였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68명) 대비 1명(1.5%) 증가

**상장회사 감사관련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 조치 현황**

(단위 : 사, 명, %)

구 분	'20 년	'21 년	'22 년	'21 년 대비	
				증감	증감률(%)
회계 법인	37	30	21	△9	△30.0
공인 회계사	95	68	69	1	1.5
법인당 평균	2.57	2.27	3.29	1.02	44.9



※회계법인은 조치 건수, 공인회계사는 조치자 수 기준

III. 시사점

III. 시사점

□ 중대 위반 건에 대한 엄정조치를 통해 회사의 자정노력 유도

◦ 중대 위반(고의+중과실) 건에 대한 회사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강화된 외부감사법에 따라 엄정조치 중인바, 회사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

\* 과징금 총 부과금액 : 94.6억원('20년) → 159.7억원('21년) → 223.5억원('22년)

□ 감사인도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할 필요

◦ 감사인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징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바, 회계법인은 경각심을 갖고 감사보고서 발행前 사전 심리 강화 등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필요

- \* 감사인 조치 건수 추이 : 37건('20년)→30건('21년)→21건('22년)
- \*\* 감사인 과징금 부과금액 추이 : 2.7억원('20년)→ 8.4억원('21년)→ 21.1억원('22년)

□ 심사·감리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피조치자 권익 보호 강화

◦ 금감원도 경미한 회계오류는 표준 심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심사하고, 중대 위반혐의 적발 시 감리로 신속히 전환하여 1년 내 조사를 종결\*하도록 하는 등 회사 및 감사인의 수감부담 완화 추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6개월씩 연장 가능

(참고) 심사·감리결과 지적사례

(참고) 심사·감리결과 지적사례

1.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및 금융자산 과대계상

(지적내용) 상장회사 A의 실사주는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회사에 유입된 자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 ①A사가 사모펀드 甲, 乙\*에 400억원을 납입하게 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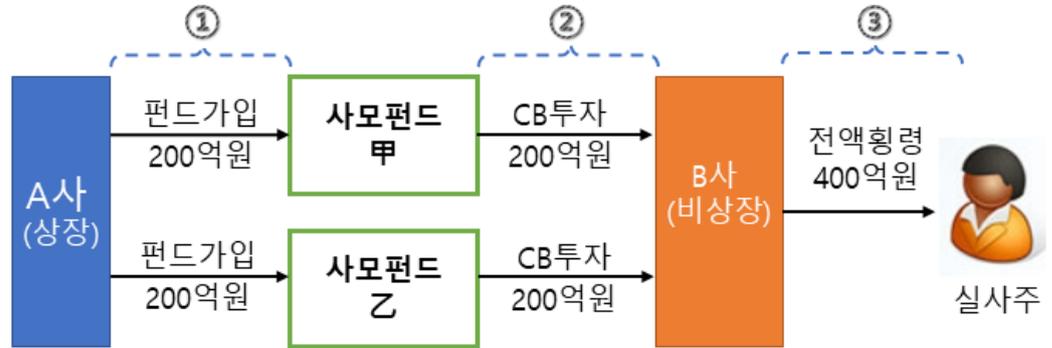
\* 증권업 전문가에 의해 회사자금 유용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회사는 동 펀드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연결재무제표를 미작성함

◦ ②동 사모펀드를 통하여 실사주 소유의 비상장회사 B\*가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도록 한 후, ③동 자금을 투자 당일에 전액 실사주에게 송금함으로써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음

\* 완전자본잠식상태로 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 등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 A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계상한 사모펀드들에 대해 손상을 인식하지 않음으로써 총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함

[ 사모펀드를 이용한 자금 횡령 거래구조 ]



□(조치내용) 증선위는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과징금(회사관계자),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의 조치

**2.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등**

□(지적내용) C사의 경영진은 전환사채를 중복으로 발행\*한 후 동 자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본인들이 유용하였는바,

\* 既 발행된 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번호, 내용 등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허위로 중복발행하여 유통

◦ C사는 중복 발행된 금액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횡령금액에 대해 임직원 대여금 및 관련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이를 누락함으로써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 기업회생 과정에서 회생법원은 중복발행된 사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 신고를 받고 시부인 과정을 거쳐 일정액을 회사의 부채로 인정

□(조치내용) 증선위는 C사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시정요구, 퇴직자위법사실 통보 등의 조치

**3. 투자부동산 계정분류 오류**

□(지적내용) D사는 자가사용 및 임대수익 목적으로 ★★개 호실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 호실은 회사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호실은 제3자에게 사무실·창고 용도로 임대하였는바,

◦ 제 3 자에게 임대한 부동산을 재무제표상 투자부동산이 아닌 유형자산으로 잘못 계상하였으며,

◦ 최초 취득 이후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면서 자산재평가 차액을 투자부동산 평가이익이 아닌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으로 잘못 계상하여 당기 순이익을 과소계상함

□(조치내용) 금감원은 D사에 주의 조치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주석 미기재

□(지적내용) E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문단34에 따라 전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 주요 고객인 F사 및 G사에 대한 정보\*를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함

\* 단일 외부고객 수익이 전체 수익의 10% 이상에 해당된다는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동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

□(조치내용) 금감원은 E사에 주의 조치

(참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34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단일 외부고객 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을 공시한다. 그러나 주요 고객의 신원이나 그 주요 고객으로부터의 각 부문의 수익 금액을 공시할 필요는 없다. (후 략)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2023.3.22. (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투자 세제지원 강화**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및 법률로 상향 규정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현행)  
+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분야

○ 공제율 상향 조정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 (현행) 대/중견/중소(%) 8/8/16 → (개정) 15/15/25
-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1년간 한시 도입
  - \* 일반 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1/5/10 → (개정) 3/7/12
  - \* 신성장·원천 기술 사업화시설투자: (현행) 대/중견/중소(%) 3/6/12  
→ (개정) 6/10/18
- '23년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 \* (현행) 일반/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3/3/4 → (개정) 10/10/10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대통령령에서 규정)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하이일드 펀드)에 1년 이상 투자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과세특례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 (적용요건) 국채법에 따라 신설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일정기간 (대통령령에 규정) 보유
  - (특례내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
  - (적용한도) 1인당 매입금액 2억원
  - (적용기한) '24.12.31. 까지 매입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중 '23년('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 상향(40% → 80%)

구분	공제율
①신용카드	15%
②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30%
④전통시장·대중교통 (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시기 조정**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3.1.1. 이후 기부한 금액부터 적용되도록 시행시기 조정

**[종합부동산세법]**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①공공주택사업자, ②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주택조합, ⑥재개발, 재건축 사업자, ⑦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⑧종중
-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근로소득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 이,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214, 2023.03.06)

(사실관계)

- 질의인이 운영하는 수도권 내 중소기업은 '20년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4명 증가 포함 전체 상시근로자 수 3명 증가
  - '20년에 청년등 증가인원에 대해 우대공제액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3명\* × 1,100만원 = 3,300만원
  - \* 전체 근로자 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그 후 사후관리 기간인 '21년에 청년 수가 '20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그 외 근로자 수 증가로 전체 근로자 수는 증가

(질의요지)

- (질의1) 사후관리 기간 중 청년 근로자 수는 감소하고, 그 외 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여 전체 근로자의 수는 증가 또는 유지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에 대해 우대 공제액이 아닌 일반공제액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기업의 고용 자체는 변동이 없으나, 나이가 들어 청년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 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잔여 공제기간 공제방법

(회신)

- 내국인이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는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어 청년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에 대해서는 제29조의7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양수법인이 세법상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영업권 손금산입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153, 2023.03.06)

(사실관계)

- 국제회계기준 채택 법인의 영업권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여부

(회신)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평가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5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가상자산공개(ICO)하는 유틸리티 토큰의 손익귀속시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543, 2023.03.06)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반의 플랫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인(투자자)에게 제공한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 경우

(질의1)

- 수익인식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1안> 내국법인이 투자자에게 토큰 양도 시 수익인식
  - <2안> 투자자가 토큰 사용 시 수익인식

(질의2)

- 판매대가로 수취한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방법(2022.1.1.前)
  - <1안> 평가기준일 현재 거래소의 최종 시세가액
  - <2안>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의 해당 거래소의 시세가액 평균액

(회신)

- 귀 (질의1) 및 (질의2)의 경우 모두 제1안이 타당함.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a href="mailto:secretary@crowe.kr">secretary@crowe.kr</a></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